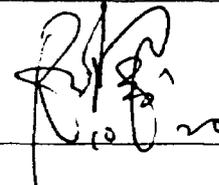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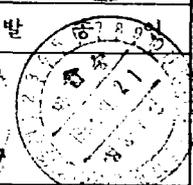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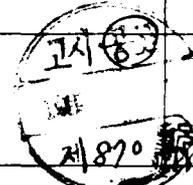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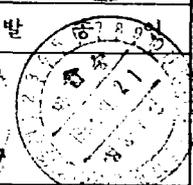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주택30321-39904	(전화: 450-1380)	시행상 특별취급						
보존기간	영구·준영구. 10. 5. 3. 1.	서울특별시청							
수신처 보존기간		구청장							
시행일자	89. 10.								
보조기관	부청장 도시정비 주택과장			협조기관	문서통제				
기안책임자	주택계장 윤병태	(김영희)	 						
경유 수신 참조	(제1안) 내무결재	반신건의 의	 						
제목	조합정관일부 변경 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p>1. 서울특별시 고시 제112호(89.3.9)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된 주택계량제개발금모제1구역제5지구 조합으로 부터 정관 일부 변경인가신청이 있어,</p> <p>도시계획법 제15조, 같은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하</p> <p>여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하고자 합니다.</p>									
		<table border="1"> <tr> <td>심사</td> <td>9.10.21</td> <td>제 73 호</td> </tr> <tr> <td>담당자</td> <td>기획예산과</td> <td>기획예산과장</td> </tr> </table>		심사	9.10.21	제 73 호	담당자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
심사	9.10.21	제 73 호							
담당자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							
가. 정관 변경내용 (별첨)		 							
나. 공람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고내용 : 별첨 공고문안 참조</li> <li>공고기간 : 1989년 10월 일 - 1989년 월 일 (30일간)</li> <li>공고규격 : 각 3단 9센티미터</li> </ul>									

원본은 서울구청 주택과에 비치됨

1989.10.21

<p>○ 공고방법 : 일간신문 1개지이상 게재</p>
<p>(국제 문화업외 의뢰)</p>
<p>○ 공고료지급 : 한국국제광고공사의 청구에 의거 인가 신청인</p>
<p>직접 부담</p>
<p>첨 부 : 1) 공고안 1부.</p>
<p>2) 정관변경(안) 1부. 끝.</p>
<p>(제 2 안)</p>
<p>수 신 : 서울특별시청</p>
<p>참 조 : 공보관</p>
<p>제 목 : 신문광고 의뢰</p>
<p>1. 우리구 주택개발제한지구 금오1구역5지구 재개발조합으로 부터 정관 일</p>
<p>부 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개발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p>
<p>의하여 별첨과 같이 공람공고 하고자 하오니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가. 공람공고</p>
<p>(제1안 "나"항 이거시행)</p>
<p>첨 부 : 공고안 1부.</p>
<p>(제 3 안)</p>
<p>수 신 : 금오제1구역제5지구 재개발조합장 귀하</p>

전 본 대 조 필 1976

제 목 : 같은 건

1. 귀아가 신청한 주택개량제개발 금오제1구역제5지구 정관 일부변경

인가 신청에 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15조 및 같은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일반

인에게 공람하고자 공고하였거 통보하니 공고안을 조합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여 일

반인에게 보여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공고(안) 1부.

2) 정관변경(안) 1부.

(제 4 안)

수 신 : 수신처참조

제 목 : 정관 일부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통지)

1. 주택개량제개발 금오제1구역제5지구 제개발조합으로 부터 정관 일부

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개발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공람공고 하였거 통지 합니다.

첨 부 : 공고(안) 사본 1부.

수신처 : 성동구 행당동 322-109 이모원 외 191명

(제 5 안)

수 신 : 서울특별시

참 조 : 주택개량과장

원본대조필

1505-25(2-2)일(1)호  
85.9.9.승인

190mm×268mm 인쇄용지 2급 60g/㎡  
가 40-41 1987. 5. 19

<p>제 목 : 정관 일부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결과 보고</p>
<p>1. 우리구 주택개발계획발 금오제1구역제5지구 조합정관 일부 변경 인 가를 위한 공람공고를 별첨과 같이 시행하였기 결과 보고 합니다.</p>
<p>가. 공람기간 : 1989년10월 일-1989년 월 일 (30일간)</p>
<p>첨 부 : 공고문 사본 1부. 끝.</p>
<p>(제 6 안)</p>
<p>수 신 : 해당제2동장</p>
<p>제 목 : 같 은 건</p>
<p>1. 구동 관내 주택개발계획발 금오제1구역제5지구 <del>에 대한 정관</del> 일부 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도서제개발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하 여 공람공고 하였기 통보하니 별첨 공고안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p>
<p>첨 부 : 공고문 사본 1부. 끝.</p>
<p>(제 7 안)</p>
<p>수 신 : 서울특별시청</p>
<p>참 조 : 서민과장</p>
<p>제 목 : 서장직인 날인 의뢰</p>
<p>1. 우리구 주택개발계획발 금오제1구역제5지구 조합으로 부터 정관 일부</p>

권은희 조필 (3)

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이후 공람하고자 아오니 직인날인하여 ( 4기 바랍니다.

가. 직인날인예수 : 공문서 사본 1부. 끝.

(제 8 간)

수 신 : 서민봉사실장

발 신 : 주택과장

제 목 : 우편 발송(등기) 의뢰

1. 도서제게발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금오

제1구역제5지구 주택개발제한조각정관 일부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내용을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아오니 별첨 공문을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공람공고 공문 1매. 끝.



공 고 안

서울특별시 공고 제 870 호

주택계량제개발 금호제1구역제5지구 조합정관 일부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155호(82.4.26)로 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431호(87.6.18)로 사업계획결정 및 같은고시 제128호(88.2.24)와 제852호(88.10.24)로 사업계획 변경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112호(89.3.9)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된 주택계량제개발 금호제1구역제5지구 조합으로 부터 정관 일부 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계획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 주택계량제개발 금호제1구역제5지구안의 토지등의 소유자와 기타 당해지구 재개발 사업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1989년 10월 22 일

서울특별시장

공고내용



가. 공람기간 : 1989년 10월 22 일 - 1989년 11월 2/ 일

나. 공람장소 : 성동구청 주택과 및 금호제1구역제5지구 사무소  
(성동구 행당동 333-9)

다. 의견제출장소 : 성동구청 주택과

라. 인가신청의요지 : 조합정관 일부변경(조합원에게 개별 통지함)

마. 정관일부 변경인가 내역 (일부생략)

변 경 전	변 경 후
제34조(건축물시설의 분양) 제1항1호	다만 구역지정 고시일(82.4.26)이전에 분할된 1필지 토지로써 그 1필지 토지의 규모가 40㎡ 이상인 토지를 소유한자로 분양대상자로 인정
제34조제2항1호	다만 국민주택(전용면적 85㎡)이하에 안하여 조합원이 희망하는 평형 1가구를 분양하고 희망평형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분양기준가액 단액으로 예정하여야 한다.

원본대조필 80

장 반 년 장 (안)



금오 제1구역 제5지구 제개발 조합

8-7 천본대조필

정 관 변 경 (안)

연	영	변	경	(안)
<p>제34조 (건축물시설의분양)</p> <p>①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다음 각오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p> <p>1. 90㎡이상의 토지만을 소유한자. 다만 소유토지가 90㎡미만으로서 분양기준가액이 사업시행지구내에 건립되는 최소평형 공동주택분양가액 이상의 경우의 토지소유자는 분양대상자로 인정</p>	<p>제34조 (건축물시설의분양) ① 공동주택분양대상자는 다음각오에 해당하는자에 한한다.</p> <p>1. 90㎡이상의 토지만을 소유한자 이거나, 그 소유토지가 90㎡미만으로서 분양기준가액이 사업시행지구내에 건립되는 최소평형 공동주택 분양가액 이상인 경우의 토지소유자와 구역지정 고시일(82.4.26)이전에 분할된 1필지 토지로서 그 1필지 토지의 규모가 40㎡ 이상인 토지를 소유한자.</p>	<p>② 공동주택의 평형배정은 제1항 각오에 해당하는자중 제31조제2항 및 3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기준가액에 상응하는 공동주택평형을 배정한다.</p> <p>1. 분양기준가액이 최소평형 공동주택가액 미만일 경우는 최소평형 공동주택 1가구를 분양한다.</p>	<p>② 공동주택의 의망평형은 제1항 각오에 해당하는자중 제31조제2항 및 3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기준가액에 상응하는 공동주택 평형을 배정하되, 다음각오의 기준에 의거 조합원 의망평형을 배정한다.</p> <p>1. 분양기준가액이 최소평형 공동주택가액 미만일 경우는 최소평형 공동주택 1가구를 분양한다. 다만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에 한하여 조합원이 의망하는 평형 1가구를 분양하고 의망평형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분양기준가액 다액순으로 배정하고, 제1항1호 규정에 의한 분양대상자중 구역지정 고시일(82.4.26)이전에 분할된 1필지 토지로서 그 1필지 토지의 규모가 40㎡이상인 토지를 소유한자에게는 구역내 건립되는 분양주택중 최소평형 1가구를 분양한다.</p>	